

朝鮮朝 後期 女性服飾과 改良論議

——朴珪壽의 「內服篇」을 중심으로 ——

趙 孝 順

〈目 次〉

- | | |
|------------------|------------------|
| 1. 서 론 | (4) 문제의 소재 |
| 2. 「內服篇」 자료의 중요성 | 3. 後期 女性服飾의 개량론의 |
| (1) 資料의 검토 | (1) 外衣와 內衣의 관계 |
| (2) 女性服飾 풍속의 혼란 | (2) 內 衣 |
| (3) 女性服飾 풍속의 통폐 | 4. 결 론 |

I. 서 론

옛 文獻에는 ‘服妖’라는 말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복식 풍속의 발전, 전개에 妖怪로운 풍조가 있다는 말로, 대개 女性의 복식의 남성적 요소 같은 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女性의 복식풍속이 ‘服妖’로써 논란된 바가 적지 않다. 조선조 太宗代의 長衣의 출현등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 男性의 옷은 대개 양반 귀족을 중심하여 中國에 갖다 부쳐 알맞는 전통을 이어온 것처럼 다루고 있으나, 女性의 옷은 항상 구습에 젖거나, 禮에 어그려지거나 사치에 흐르는 등 요괴로운 일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中國에 心醉된 學者들은 여성의 服飾風俗에 대한 비평과 그 개량론의가 심심찮게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오던 중 특히 최근세의 朴珪壽의 「居家雜服攷」를 읽고 이 책을 중심하여 이 점을 정리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女性의 服飾風俗

이라 하더라도 기록에서 엿어볼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王家나 士大夫家의 婦女服飾에 한하고 일반庶民들에 관한 기록은 영성하여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女性服飾이라 하더라도 대개는 겉옷이나 겉에 나타나는 장식만이 중요시 되고 생활에서 더욱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속옷으로서의 內衣에 대한 기록이나 논의는 거의 엿어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서 본인은 여성복식 중에서도 특히 外衣와 內衣의 二重構造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적었던 女性의 內服 내지는 外衣와 內衣의 관계를 이 기회에 생각해 보려 하였다. 이 글의 방식은 우선 朴珪壽의 「內服攷」를 주요 테마로 삼아 자료로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어서 몇 가지를 문제삼아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보려고 생각했다. 女性의 服飾을 생각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그것이 남성들의 복식과는 달리 특별히 風俗史的 관찰을 요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여성복식에 대한 실록등의 기록들도 모두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바, 이것이 남성의 복식과는 달리 항상 옛 습관에 따른다는 여성복식 변천의 한 원리같은 것을 발견하게 한다. 이것

은 남성의 복식이 항상 옛 典籍에 기준을 둔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중요한 특징이 된다. 여기에다 여성의 호기심 내지는 유행심리가 심한 사회적 문제를 이르키며, 앞에 말한 바와같은 '服妖' 운운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服飾史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風俗史와 服裝心理등의 해박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런 조건에서 본인은 미흡한대로 위에 지적한 몇개의 관점에서 서서 이 글을 기초해서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계속해서 이 땅면에 좀더 관심을 두어 보려고 생각한다.

II. 内服篇 자료의 중요성

(1) 資料의 검토

朴珪壽(1807~1876)의 「居家雜服攷」 중 특히 이 「內服편」은 이 부녀자의 복식제도를 논의한 것이다. 「內服」이라면 현대에는 특히 '속옷'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책에서는 남성의 복식에 대한 여성의 복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녀복식 가운데 사치와 유행에 의하여 변해진 비루한 모습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 이 편의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특히 짧아진 저고리, 최대한으로 많이 끼어 입는 속옷들, 요란해진 머리장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풍속 폐폐의 원인을 유교적 예의 관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실제로 옷을 입는 여성의 처지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주체성을 결하고 있는 느낌이며 역대로 조정과 유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내용들과 발상자체에서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큼은 논의의 대상이 될 문제

를 제기해 주고 있는데 있다. 지금까지의 服飾論議는 주로 그 겉옷(外衣)에 치우치고 있었는데 그는 겉옷과 속옷의 관계로 이 여성 복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것은 속 저고리가 겉옷으로 된 내력을 비롯하여 여성의 속옷들의 문제 내지는 가발로 장식된 首飾의 사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女性服飾 풍속의 혼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조에서 여성복식의 개량이 논의된 것만도 적지 않다. 가령 太宗 7년 (1407) 4월에 왕이 친히 文臣에게 시험을 보일 때에 時務策으로 婦女服飾의 改良策을 논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衣冠制度가 모두 예법에 맞는데 하필 婦女服飾만은 옛날 風俗대로 입게하니, 이것은 과연 개량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하는 취지였다¹⁾. 또 太宗 9년 3월에는 司憲府에서 올린 몇 條目的 時務策 가운데 특히 女服制度의 改良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문물이 中華와 비겨 별로 부끄러움이 없지만, 유독 女服制度만은 舊習을 引用하고 있으니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올려진 것이었다. 곧 舊制에 따라 그 宜當함을 헤아려 法度에 지나친 것을 버리고 사치한 것을 없애며 등급에 따라 분별있는 제정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²⁾. 이것은 임금의 뜻과 같이, 옛생각과 크게 어긋남이 없고 현세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언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특히 하층부녀의 복식이 상류층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금제의 내용을 주로하고 있었다.

그 뒤로 世宗代에는 임금이 女性服飾의 개량책을 다시 논의했는데 許稠가 중국의 예를 들어 이것의 실시를 않도록 견의했다³⁾. 이 시대에는 이 밖에도 몇 가지의 여성복식 개량논의가 있었던 것을 보면 전대로부터의 개량논의가 잘 실현을 보지 못했던 증거로 볼 것이다. 그리고 世祖

1) 太宗實錄, 太宗七年四月條.

2) 太宗實錄, 太宗九年三月條.

3) 世宗實錄, 世宗五年七月條.

代에는 여성옷이 남성과 같아지는 폐단을 논의해 이른바 ‘服妖’의 논쟁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女性이 남자처럼 長衣를 입어서는 안된다든가 또 上下의 의복이 같을 수 없다든가 하여 주로 의복에서 오는 계층의 구별을 의식한 양반주의적 관념을 느낄 수 있다. 世祖代에도 부녀의 服飾과 首飾이 옛풍습에 젖어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보면 풍습이 제도보다 향상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시대를 내려와 安鼎福이 말하기를 저고리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허리를 덮지 않았다(星湖僅說類選, 文獻備考)등등의 논의가 되풀이 되고 있다⁴⁾. 또한 正祖代에는 商工人과 賤隸, 庶人 男女의 겹저고리(襦袴衣)를 금한 기록이 보이며 여성의 首飾에 대해서도 사치와 변별 등이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어온 개량논의의 대상이 되었었다⁵⁾.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자료의 저자인 朴珪壽가 이 「內服篇」을 저술하는 목적은 제일차적으로 「居家雜服攷」라는 복식천관에 대한 논의의 이유에 칙결된다. 다만 「內服篇」만을 따로 떼어 생각한다면 특히 부인의 복식 풍속이 심히 혼란된 현실에 대한 그의 뚜렷한 개량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이 혼란된 복식의 풍속을 고발하고 자기대로 한 제도를 상고하여 제정하려는 의도를 이 내복편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나라의 시책에 따른 검소한 생활을 중진하고,

둘째로, 전시대의 정당한 분들의 노력과 고심을 본받으며,

세째, 祖父 朴趾源의 이루지 못한, 끼치신 뜻을 생각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저자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온 생활방식의 척도에서 발현된 것으로, 그는 근본적으로 의복의 제도는 평리하고 겹소하여 청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⁶⁾.

그는 이 글 전체를 통하여 복식이 예의에 입

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뚜렷한 윤리의식(倫理意識)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다만 위에 인용한 세 가지의 목표에서 이 ‘예의’를 들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첫번째 항목의 ‘나라의 시책’이란 것이 이미 예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뒤에 다시 논의될 것 이지만, 검소하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사회와의 관련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 선대의 정당한 분들의 노력과 고심이란 이 책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바, 尤庵 宋時烈(1607~1689, 戒女書), 陶庵 李緯(1678~1745, 四禮便覽), 閒靜堂 宋文欽(1710~1752, 婦人服飾攷)등의 복식론의를 말한다. 그리고 특히 저자 朴珪壽의 가문은 일찍부터 대대로 家法을 정하고 복식제도의 개혁에 힘써 왔으며 그 중에서도 그 할아버지 燕岩 朴趾源(1737~1805)의 복식개량의 뜻을 잊겠다는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그의 부인복식제도의 현상 비판에 귀를 기우리면, 우선 그는 현실적으로 복식제도가 혼란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지도층이 복식제도의 개량과 발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복식의 지도와 개량이 번거롭고 시시한 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부녀자들 자신은 몰라서 복식제도를 혼란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士大夫들은 또한 그들 부녀자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구태어 개혁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째로 비판 정신의 결여로 개혁의 뜻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풍속을 따른다는 구실로써 현상에 맡겨두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네째로 임진란 병자호란 이후에 사회가 혼란했고, 사회가 평정된 뒤까지도 禮制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었다는 이유등을 들고 있다⁷⁾.

그리고, 이러한 개량 논의를 하게된 풍속혼란의 내용은 중국의 제도와 비견제도가 비루해진

4) 柳喜卿, 文獻小考, 李朝時代의 女子服飾小考, 한국문화논집, p. 313.

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 315.

6) 朴珪壽, 居家雜服攷, p. 1318~1388.

7) 朴珪壽, 전계서, p. 1386.

점, 불편한 점, 화려를 극하는 점, 청결하지 못한 점 등 전반에 걸치고 있다. 또한 복장 머리 장식에서 신(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치고 있다.

(3) 女性服飾 풍속의 통폐

근세 우리나라 복식의 제도와 풍습의 통폐로 그가 지적하고 있는 첫조건은 사치였다. 가령 머리장식을 예로 들더라도 가발(假髮)은 조선 후기에 지극히 사치한 풍조가 유행하여 英祖 32년 (丙 3. 1756)과 正祖 12년(戊申, 1788)에 가발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었다⁸⁾. 이때 풍속이 심히 사치하게 되어, 심지어는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까지 이를 장만하기에 이르렀고, 이 가발을 구하려는 사치풍조 때문에 수년씩 혼례식을 지내지 못하는 사례까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치 풍조는 그가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의복개량의 세 가지 목표, 곧 편리함, 겸소함, 청결함 중에서 특히 겸소와 편리함의 조항에 위배하는 일이며 이것은 결국 청결과도 관련있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통폐였던 것이다⁹⁾. 또 이것은 禮儀觀의 타락에서 오는 현상으로, 궁극에는 국가적 윤리의식의 상실에 기인하는 근본적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란한 풍조는 냉기나 비녀 끊기에서부터 옷소매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식 풍속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퇴폐 풍조는 '창피함'인데 이도 역시 禮儀에 어긋나는 복식풍속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결함'과 '불편함' 등의 통폐가 이어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풍속의 통폐를 그는 제도의 빈곤에 유래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禮儀가 근본적으로 혼들렸음을 말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그가 여성의 복식에 관심을 크게 갖는 이유는, 특히 옛 제도를 아주 잊어버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는 원래 중국의 복식제도에서 그 개혁의 원류를 찾으려 했

第四號

던 만큼, 중국의 옛제도를 아주 잊어버려 여성의 복식풍속을 남성의 복식에 비해 더욱 통폐가 크다고 보고 있었다. 가령 부녀자들의 좁은소매 저고리(窄袖)나 머리를 땋아 길게 뒤로 늘이는 변발(辯髮)등의 모습은 중국에서는 漢唐 이후로 볼 수 없는 제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복식의 통폐는 고려시대에 元나라의 비루한 제도를 본 받은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士大夫家의 집안에서까지도 오랑캐의 예복으로 제사를 지내기 4~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지적은 유학자들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가졌던 전통적 복식관이었고 그에게서만 비롯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服飾風俗 혼란의 본의는 결국 禮儀문제로 그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예를 들면 좁은 소매의 저고리나 땋은 머리 등이 이미 수백년간 사용된 풍속으로, 편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는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家門의 예법을 정하여 이 예법에 따른 복식을 고증 착용하려 하지만,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풍속 개량에 관심을 갖는 예의 있는 집안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장 개량의 대상으로는 여성의 웃웃 가운데서 內衣가 外衣가 되었다는 예의의 문제, 그리고 그 짧아진 길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웃 가운데서는 특히 속곳들의 사치풍조가 문제가 되고, 이것도 결국엔 예의제도와 관련이 있다하고 있다. 首飾에 있어서는 변발(땋은머리)과 그 사치성이 주대상이 되고 있다.

(4) 문제의 소재

그는 위와같은 복식 풍속의 통폐를 개선하는 방도로서 儒教의 仁恕를 倫理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가령, 복식의 장식에 동물의

8) 英祖實錄, 卷 87. 英祖 32年正月條.

9) 鳥山喜一, 鮮民白衣考, 東洋史論叢, pp. 753~765 昭和 8年

뼈나 가죽을 사용하는 것도 지극히 근신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다른 빈천한 사람의 머리를 짤라 가발을 즐김은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옷을 입는 禮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 분수에 맞게 차려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수란 신분적 분수 보다는 경제적 분수에 치중한 지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남의 옷을 세(貰)내어 입는 통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¹⁰⁾. 이 옷을 세내어 입는 통례는 머리의 가발에서 오는 풍속과 함께 가산을 기우릴 수 있다.

또 의복의 제도로 말한다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朱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의관이란 실제로 몸에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 될 뿐이라는 저자 자신의 실용적 실학적 정신이 이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선다면, 앞의 항에서 지적한 바, 복식풍속의 통례의 이유로 지적된 '제도의 빙곤'이란 것도 역시 윤리의 타락과 실제적 사고의 빙곤에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가 옛법을 상고하고 고증함에 있어서 옛 중국의 家禮書들뿐 아니라, 그림을 상고의 자료로 삼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의 실학적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朴趾源은 물론 그 선대로부터 계속하여 대를 물려온 家法을 정리하고 그러한 가계의 전통이 朴珪壽의 이 저서를 낳게 했다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강조해 두고 싶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그가 복식제도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中華의 옛제도라는 점이다. 그는 조선의 문물의 아름다움이 모두 中華의 제도를 이용한데 있다고 전제하고 그 러기에 周公의 禮法에 맞아야 하며, 특히 부녀자의 복식제도가 이를 완전히 버리고 봉고의 오랑캐 법을 배웠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 말한 宋時烈 등이나 자기 선조인 朴趾源 등에게서도 계속되어온 사고방식으로 여기에서 이 저자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점이다. 또 이와 관련한 理想으로서의 禮儀論의 존중이 그가 앞

에서 내세우고 있는 복식개량의 실제적 목표인 편리함, 간소함등과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는 가가 문제로 남는다. 편리하고 간소하게 하려는 것이 예의에 맞도록 엄숙하게 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논의의 근거를 모두 중국의 관계서적들에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그의 선대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거의 벗어날 수 없었던 습관의 하나이지만, 그가 자기 家門의 禮儀制度를 들고 나오는 것과 같은 용기로써 우리의 옛 풍속제도에 좀더 무게를 두었더라면 그의 논의는 참신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III. 후기 女性服飾의 개량논의

1) 外衣와 內衣의 관계

우리 복식제도는 예로부터 끼어 입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 복식을 이해하는 한 중요한 기본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대개 복식제도를 논할 때에는 그 겉 옷만을 다루게 되고 內衣에 대해서는 거의 論外로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복식논의가 피상적이기 쉬운 조건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여성의 웃옷은 정장인 경우, 대개 「삼작 저고리」라는 것을 입었다. 맨 속에 속저삼, 그 위에 속저고리, 그리고 겉에 웃저고리를 입는 방식이다¹¹⁾. 물론 이때 웃저고리를 뺀 속저고리와 속저삼이 말하자면 內衣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삼복 더위에도 적삼 한겹만을 입는 법은 없었던 것이 정식이다. 이때 內衣로 입는 속저고리나 속저삼은 그 치수가 웃저고리보다는 조금씩 작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던 것이 이런 제도에 근본적 혼란을 가져온 것은 임진란으로 생각된다. 朴珪壽에 따르면 士大夫가 다, 이 점에 있어서는 朴珪壽의 명쾌한 논지를 친탄하게 되는데 그는 우리의 服飾制度와 그 風俗의 혼란을 이 복식제도의 內外라는 二重構造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이에 따라서 外服과

10) 朴珪壽, 전계서, p. 1402.

11) 梨大出版部, 韓國女性史 II 권 p. 197.

內服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부녀의 服飾風俗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士大夫家의 부녀자의 경우, 임진란 이후에 겉옷(上衣)이 없어지고 속에만 입던 오랑캐의 복식모양이 겉으로 들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겉옷’이란 저고리를 말하며, 길, 소매, 깃, 셀, 동정, 고름 등이 갖추어진 한복의 웃옷이다. 속옷은 ‘속저고리’ 혹은 ‘속적삼’으로 저고리 속에 끼어 입는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속저고리 벗고 은반지”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치례를 풍자하는 뜻이 된다. 곧 적삼만을 입어서는 은반지를 겉 격식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일찌기 世宗 임금이 부인의 服飾制度를 개혁하여 중국제도에 맞게 하려한 일이 있었다. 이때 相臣이었던 許稠(1359~1440)는 자기가 중국에 가서 보고 온 바에 따라 우리나라 부녀자의 服飾制度가 중국과 별다름이 없으니,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보더라도 우리 부녀자의 복식제도는 이때에도 중국과 같이 外服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朴珪壽에 의하면 이는 許稠가 그 겉옷만을 보고, 그 속옷 속에 입고 있는 바 꼭 고쳐야 할 오랑캐 양식의 속옷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 논리라는 것이다. 만약 그의 말처럼 우리의 부녀복식이 중국과 같다면. 중국의 부녀가 우리 부인들처럼 착수(窄袖 : 좁은소매저고리)와 瓣髮(머리를 땋아 길게 뒤로 늘어뜨린 머리모양)의 모습이어야 할 것인데, 漢唐 이후로 전하는 그림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朴珪壽가 오랑캐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옷에 있었다. 그리고 겉옷이 없어지고 속옷이 임진란 이후에 겉으로 드러나 가릴 것이 없게 되면서 옛 중국제도가 오랑캐의 제도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다. 또한 朴珪壽의 집안이 임진란 후에도 대대로 부인과 처녀들에게 겉옷을 갖추어 입게 했지만는 집안에 喪事가 계속되고 제도가 거추장스러워서 결국 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第四號

이 속옷은 원래 길이가 몹시 짧고 통이 아주 좁은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俗名 저고리(赤又里, 赤古里)라는 것으로, 그 소매는 겨우 팔뚝을 가릴 정도요, 그 옷자락은 가슴에도 채 내려가지 않는 정도였다. 조선 후기의 李德懋(1741~1793 ; 靑莊館全書)에 의하면 여름에는 유방이 보일 정도로 짧았다 하여 이런 제도가 항상 사대부들 간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런 좁고 짧은 형태로는 이리저리 여미고 단속한다고 해도 좋은 모양새가 날리 없었다.

이것이 어느때부터 만들어 입게 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려 말기에 元나라의 풍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金東旭教授에 따르면, ‘저고리’란 말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초기라 한다. 世宗 2년 元敬王后 選寢儀에 “紅段子 赤古里”라 보이는 것이 그 최초로 보이는데 역시 이는 蒙古 계통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외래적 영향으로 옛부터 내려오던 웃옷인 ‘우티’(尉解=웃옷)가 짧아진 형태로 보는 것이다¹²⁾. 또 그 전대 太宗代에도 黃喜가 임금에게 女服을 華制로 고치는 것이 婚禮制를 고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라고 여쭌일이 있다¹³⁾. 이에 대하여 임금은 風俗을 바로잡은 연후에 女服을 고쳐도 늦지 않다고 하여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華制가 아닌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겠다. 여기서도 좁은 소매의 저고리등이 문제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太宗十二년 六월 司憲府의 상소에 따르면 “衣冠制度가 다 華制를 따르고 있는데 女服 한 가지는 아직도 舊習을 따르고, 또한 本朝의 禮服이 僉侈無節하다”고 하였다. 露衣, 櫛裙, 笠帽는 尊者的 服飾인데 지금은 商賈賤女도 모두 이를 입도록 사치하며 도무지 尊卑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 五品 이하의 正妻는 露衣를 못입게 하고 從婢는 櫛裙을 입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庶人婦女 및 從婢 賤隸의 복식은 羅紗 緞子의 笠帽 櫛裙을 불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太宗이 禮曹에 評定

12)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13) 太宗實錄, 卷二十八, 太宗十四年 十月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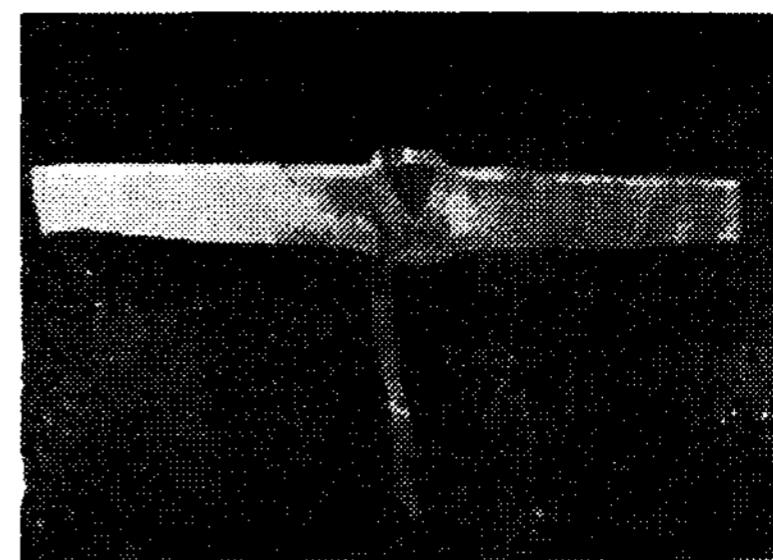
을 시켰을 뿐 결정여하가 확실치 않으나¹⁴⁾ 이로 보면 太宗당시에는 上流婦人服을 기준으로 오히려 上向流行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던 것이 임진란을 계기로 해서 婦女子의 上衣의 경우, 上流의 上衣가 없어지고 內衣의 하나였던 속적삼 형태의 저고리가 유행하는, 말하자면 庶民식의 下向流行的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의 실학자 李灝의 『星湖僊說』에서는, 당시에 부녀의 짧은 저고리와 좁은 소매가 어떻게해서 나온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일임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다. 곧 “부녀의 짧은 저고리와 좁은 소매는 어떻게해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천에 통용하니 매우 한심한 노릇이다. 더구나 여름옷 훌 적삼은 위로 돌돌 말려서 치마 허리도 감추지 못하니 더욱 해괴하다”

그런데 여기서 李灝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녀의 저고리가 짧아지고 좁아진 것은 대개 임진란을 겪은 뒤인 것이라는 점을 朴珪壽는 확실히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발견된 옛 遺物들에서도 어느정도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각 시대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柳喜卿教授의 보고에 의하면 朝鮮末期 이후에 부녀자들의 저고리가 아주 짧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54년에 태어나 1821년까지 살았던 清衍君主(사도세자 혜경궁 홍씨의 소생)의 수십점 저고리를(국립박물관 소장)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柳教授는 그 특징을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짐과 동시에 깃과 셋등의小型化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 점은 그보다 100여년 앞섰던 것으로 보이는 全州 崔氏(?~1732)의 遺品(梨大 가정대 소장품)과의 비교에서 더욱 확실해짐을¹⁵⁾ 또 이것을, 최근 보고된 임진란 전, 조선초기의 저고리들과 비교하면 그 특징은 더욱 확실해 진다¹⁶⁾.

특히 朴珪壽의 언급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



[사진 1] 1900년대 저고리(세종대학 박물관 소장)

는 흥미로운 점은 전시대의 內衣의 하나였던 속적삼형태의 저고리가 겉옷으로 유행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흥미있는 사실로서 지금에 비친다면 속내의 바람으로 겉옷을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 논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한 예로서는 19세기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遺物에 의하면 저고리의 등길이는 짧아져서 1900년대 坡平尹氏(京畿道華城出土)의 저고리 등길이는 25.3cm밖에 안된다¹⁷⁾. 또한 梁憲洙將軍(1816~1888)의 夫人이 입었던 누비저고리의 등길이는 25cm이며 겨드랑 밑이 2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것이 된다¹⁸⁾. 이와같이 겨드랑 밑이 가장 짧아져서 거의 一直線에 이르게 된 유물 [사진 1]의 (세종대학 박물관 소장) 특기할만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풍속은 양반층과 서민층에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그러한 현상은 蕙園의 풍속도[사진 2]등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통일된 풍속이라고는 물론 말할 수 없다. 가령 일본에 체재했던 독일의 박물학자 시볼트(1796~1866)가 조선 漁夫의 一家를 그린 그림에 따르면 漁夫의 부인은 아주 옛날식의 긴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개 19세기 중엽에 日本 長崎에 표류한 조선인 漁夫의 가족을 그린 것이다.

[사진 3]

여기 왼편 부인의 복장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¹⁹⁾.

14) 太宗實錄, 十二年六月, 卷二十三.

15) 梨大出版部, 韓國女性史, Ⅱ권, p. 189~191.

16) 金東旭, 高福男, 出土朝鮮時代遺衣의 服飾史的研究, 「服飾」2號.

17) 高福男, 韓國服飾史의 再檢討, 한국민속학 11권 p. 914.

18) 梨大出版部, 韓國女性史, Ⅱ권, p. 192.

19) 시볼트, 「日本」제 5권 「조선어부의 一家」



〔사진 2〕 申潤福의 풍속도중에서



〔사진 3〕

(2) 內 衣

① 속적삼

홑으로 된 안옷을 말하며 그 형태는 저고리화 같으며 치수도 저고리와 비슷하나 약간 작게하여 입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속적삼 형태의 여름격삼이 유행하였던 풍속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며 대개 홑으로 하는데 바느질법은 백이로 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속치마(無足裙)

다음으로 치마속에는 속치마를 입었는데, 이것은 겹겹이 입고 속명으로 無足裙이라 했다. 朴珪壽는 이 제도의 부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겹이 여나른개씩이나 포개 입어, 그 사치성과 비활동성이 컷기 때문이다. 또 그 옷제도의 근거도 희박하며, 다만 저고리나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宋史』「高麗傳」에 부녀의 둘려입는 치마가 있는데, 이것은 겹겹이 그 수가 많을수록 더 좋게 여긴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국의 특별한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中國 제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름이 '無足裙'이듯 아무리 많이 끼어 입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만큼 부녀자들은 이 속치마를 많이 끼어 입었으니, 부인들은 십여개씩, 그리고 젊은 여인들이라도 5~6겹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만큼 끼어 입고도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는 방식은 가장 짧은치마[短裙]를 속에 입고 차례대로 길게 해서 허리에 거듭 둘렀다. 이때 그것들을 다 갓풀로 힘껏 굳게 붙여서 불룩하게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긴 것을 차례대로 짧은것 위에 덧입었기 때문에 허리 이하의 배가 마치 독을 엎어 놓았거나 종을 엎어 놓은 것처럼 불룩하고 둥글게 보인다.

몸에 찰싹 붙은 좁디좁은 저고리에다 항아리 같은 불룩한 치마를 끼어 입은 李寅文(1745~1821)의 美人圖를 보면 이런 여인의 복식유행을 잘 볼 수 있다〔사진 4〕〔사진 5〕. 이 사진에서



〔사진 4〕 李寅文의 美人圖



〔사진 5〕 奴婢의 옷

웃저고리가 주는 느낌은 가냘프고 좁은 어깨를 맵시있게 밀착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밑으로 바싹 조여 맨 저고리 고름 때문에 아 美人의 가슴 앞자락의 좁은 앞판은 두줄기 주름이 잘 만큼 가슴이 연약하다. 이에 비하면 속

치마를 끼어 입는 덕택으로 둔부(臀部)와 이를 중심으로 한 좌우 양편의 볼륨이 항아리만큼이나 강조된 모습을 보인다. 웃저고리의 밀착된 선 때문에 속치마가 주는 외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시대적인 美의식을 지극히 강조하는 예로 보인다. 혹은 그것은 朴珪壽의 말처럼 鐘을 엎어 놓은 것처럼 둥글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땅에 여유있게 끌리는 겉치마의 길다란 여운 때문에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복식의 미적 심리가 이 속치마의 수를 지극히 유행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여성 속옷의 사치가 서민 대중의 실생활에까지 미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 상류층 부유층에서부터 사교계에 출입하는 기생들에게 더 큰 유행을 일으켰을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겉치마의 길이가 발을 덮는 길이로 남아있는 한 이 속옷들이 계속 유행을 낳을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치마의 사치스러운 유행이 실제로 지극히 불편하고 우둔하게 하는 폐단이 크다는데 있다. 특히 이 시대(조선시대)에는 위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婦德으로 삼았던 만큼 이런 모습으로는 시부모 앞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활동도 불편하여 평상복으로서는 부적당한 內衣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과 여성의 하반신 복식구조와의 조화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③ 단속곳

朴珪壽는 이 짧은치마 외에 다른 내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녀자들의 옷에는 속옷이 적지 않았다.

1934년 “朝鮮의 服裝”에는 1930년대의 복식을 기준하여 여성의 下衣로 다음 것을 들고 있다²⁰⁾.

단속곳(內襯衣)

바지(袴)

단속곳(單襯衣)

속치마(內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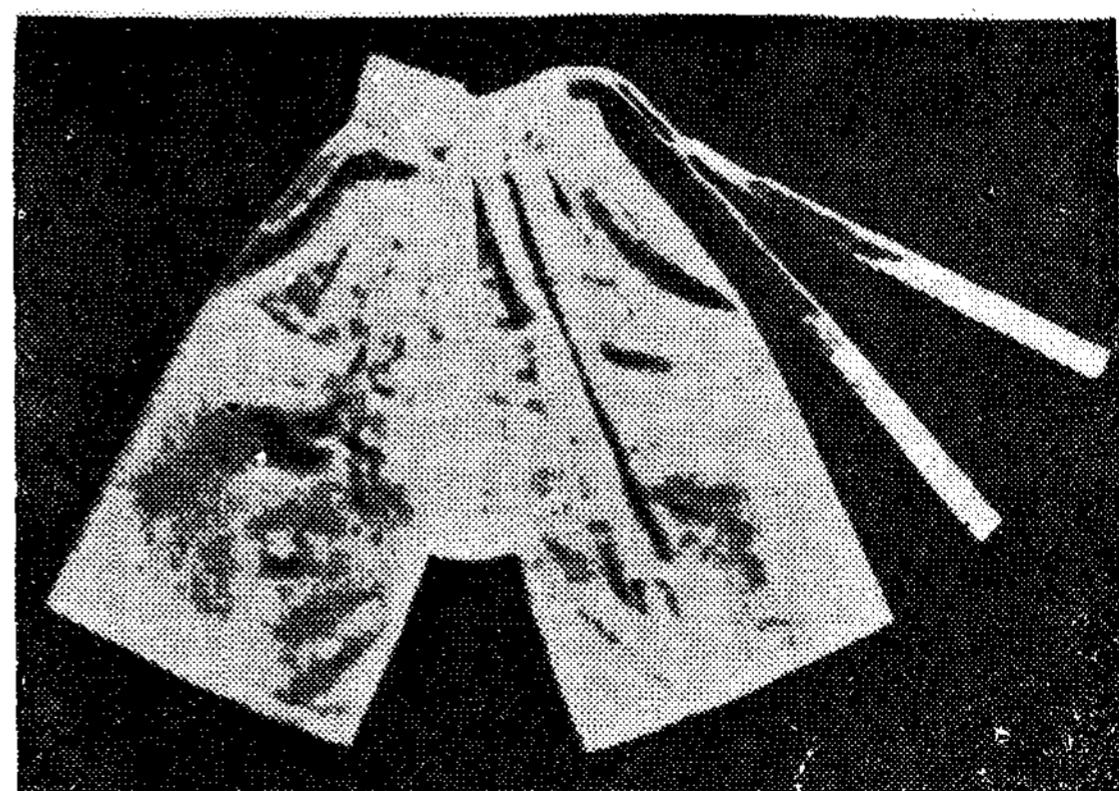
치마(裳)

위에서 보듯이 여성의 속치마 다음에는 ‘단속곳’을 입게 된다. 이것은 사투리로는 겉속곳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고장바지 위에 덧입는 속곳이다. 이것은 일종의 속치마로 웃치마 밑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감을 사용했다. 속에 입는 바지보다는 길고 허리부분에 말기가 달려 원편 끝에서 끈으로 묶게 되어 있다. 이렇게 끈으로 매는 것이 남성의 바지에 비해 부녀복식의 한 특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신분이나 빈부에 따라 옷감의 차이가 있고 계절에 따라 홀단속곳과 겹단속곳이 있었다. 石宙善教授의 저서에 따르면 백수화주쟁 겹단속곳, 백정주쟁 단속곳, 백을라 단속곳, 백저포 단속곳등 여러가지 이름이 보인다. 색에 있어서는 주로 흰색을 사용하였으며 나이든 사람들은 옥색이나 회색을 입었다고 한다²¹⁾. 또한 朝鮮末 궁중여복중에도 王妃服, 嫫宮服 아기公州, 君夫人服, 內人服色, 尚宮服의 일습에서도 단속곳을 공통으로 입었던 것을 볼 수 있다²²⁾.

④ 바지(袴)

속담에 “고쟁이를 열두벌 입어도 보일것은 다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때 고쟁이란 단속곳의 속에 입었던 옷이다. 이것은 통이 넓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게 만들고 아래를 예미도록 된 바지의 일종이다. 혹은 ‘고장바지’, ‘꼬장바지’, ‘꼬장주’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밑을 가리우기 위해 입었던 옷이다. 이것은 속속곳[사진 6]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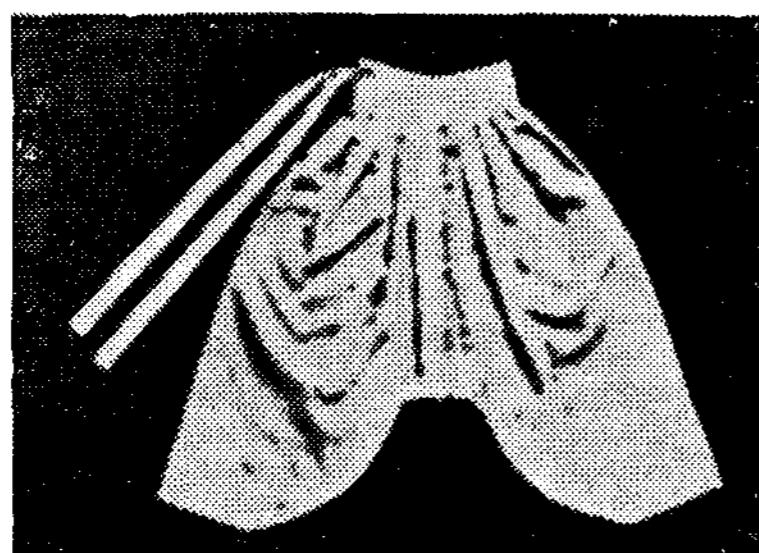


[사진 6] 속속곳

20) 金東旭, 전계서, p.348.

21) 石宙善, 「韓國服飾史」.

22) 金東旭, 李朝中後期의 女服構造, 아세아여성연구,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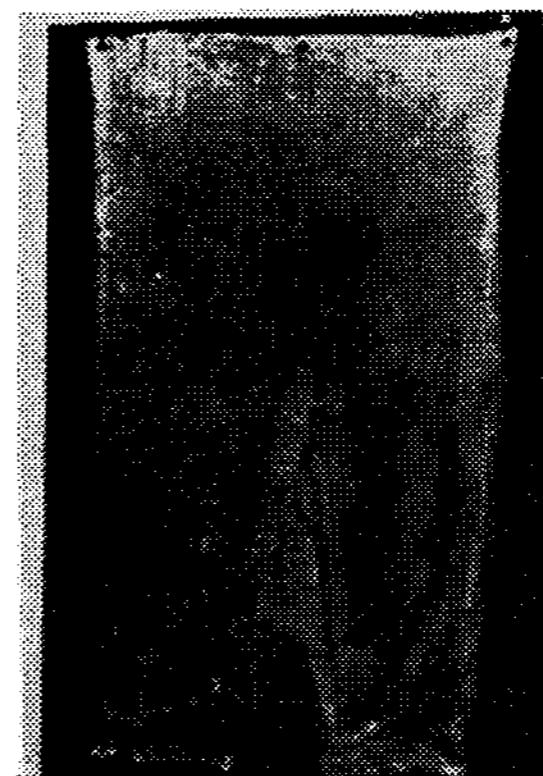


[사진 7] [바지；石宙善；복식사에서]

에 입는 옷으로 속곳에 비하면 훨씬 웃웃같은 맛을 주는 바지이다. 입어서 활동에 자유스럽도록 통이 넓은 것에 비하면 바지가랭이는 비교적 짧다. 전체적으로는 그 위에 입게되는 단속곳을 입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치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말기가 달리고 그 오른편 끝으로 1~2cm·넓이의 곤이 달려 흘려내리지 않게 매도록 되어 있다[사진 7 참조]. 상류계급에서 正服을 할 때 밑받침 옷으로 단속곳 위에 입어 上體를 풍성하게 보이게한 너른바지는 단속곳과 바지와 겹쳐 놓은 것 같은 가랭이가 넓은 것으로 겹으로 되어 있고 앞은 막히고 뒤가 터져 있다. 이 너른 바지는 특수층에서만 입던 것으로 양단을 네 폭으로 만들어 큰일때는 의례히 이것을 입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婚需에 이것을 넣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이 바지는 추울 때에는 방한용 내복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비 바지를 입기도 했다. 「高宗 31년 甲午郡夫人衣服件記」에 따르면 백화방주쟁 잔누비 넓은바지 백화방주 납작누비 바지. 백정주오목누비 바지 등의 누비바지와 백왜주 민바지, 백정주 민바지 백반주 민바지 등의 민바지의 이름이 보인다²⁴⁾. 특히 이들 누비바지의 경우 잔누비, 납작누비, 오목누비등은 하루 이틀에 되는 바느질이 아니며 오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니 그 솜씨와 부녀들의 노고를 눈에 보는듯하다. 이러한 부인 속바지도 바지길이나 바지 부리의 유행을 볼 수 있는데 1530年代 順川金氏의 絹바지는(忠北淸原발굴) 길이가 87.5cm 부리는 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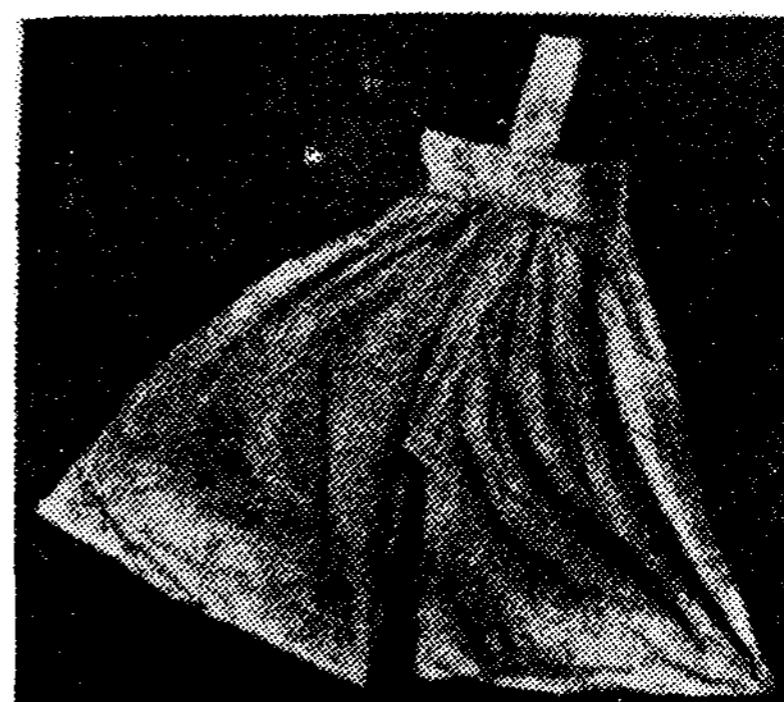


[사진 8] 1530년대 絹바지(충북대학 박물관 소장)

[사진 9] 1580년대 絹바지
(Lee, Cheon joo 소장)

인데 밑이 터져있는 것이 특징이며
[사진 8] 1580년
대 明紬누비바지
[사진 9]는 끝부
분을 약간터서 발
목에 고정 시켰는
데 속치마와 비슷
한 속바지이다²⁵⁾.
1640년대 求禮孫
氏의 木綿바지[사
진 10]는 길이가
92cm 부리가 69cm

이며 1700년대 李氏夫人(서울발굴) 絹바지[사진 11]는 길이가 79cm 부리가 71cm 인것을 볼 수 있다. 이상 속옷으로서의 바지도 유행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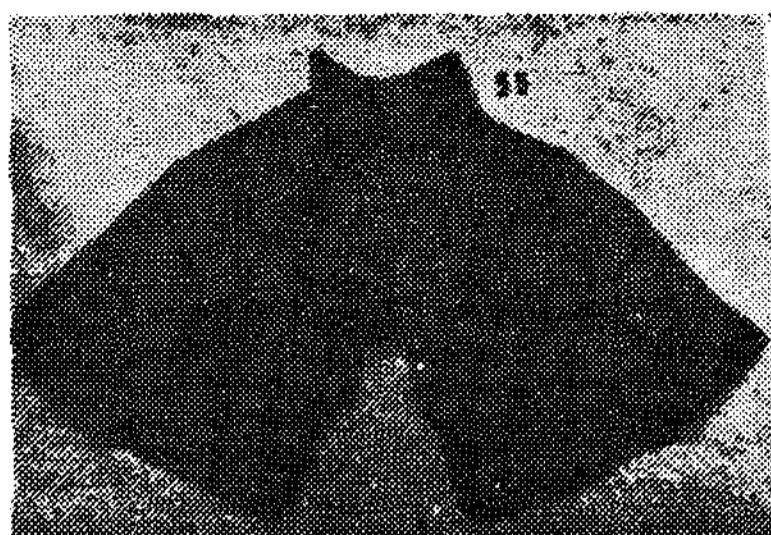


[사진 10] 1640년대 木綿바지(충북대학 박물관 소장)

23) 梨花女大出版部, 韓國女性史, Ⅱ권, p. 201.

24) 石宙善, 전계서

25) 高福男, 朝鮮時代의 일반복식연구, 청주사대론문집, 9輯, p. 208.



〔사진 11〕 1700년대 絹바지(金재호 소장, 서울)

그 Silhouette가 변했으며 그 재료도 貴族계급에서는 화려했던 모습도 발견한다.

⑤ 속속곳

“속곳바람”이라는 말은 맨몸을 겨우 가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속에 입는 옷이 ‘속속곳’이다. 이것이 여자의 맨속에 입는 옷으로 다리통이 넓고 밑이 막히게 되었다. 흙으로 지은 속속곳은 單女衣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맨 속에 입는 옷인만큼 부드러운 옷감을 사용하며, 또한 그 크기나 길이도 가장 속옷답게 작았다. 모양은 단속곳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역시 허리부분에서 끈을 매어 훌려내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단속곳과는 반대방향으로 매어 허리에서 맨부분이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배를 사용하고 겨울용은 綿布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양반과 상류부인들은 여름에는 가는 모시, 겨울에는 굽은 명주를 사용했다²⁶⁾.

⑥ 다리속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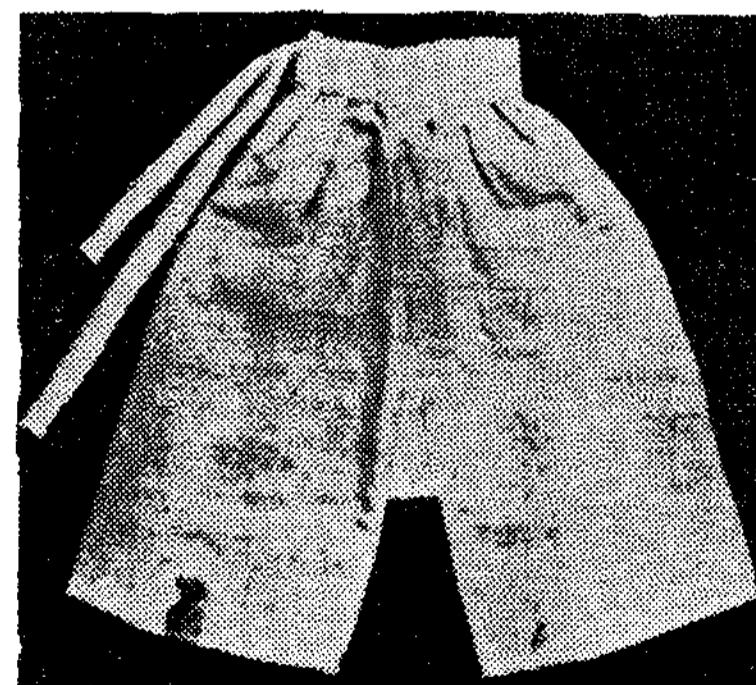
속속곳이 크기 때문에 자주 뺄수 없어서 이려한 조그만 것을 입고 자주 뺄기 위해서 입었던 것으로 본다. 또한 속속곳이 없어지면서 부터는 이 다리속곳을 흔히 입게 되어 바지의 더러워짐을 막았다고 본다. 그 형태는 훌겹으로 긴 감을 허리에 달아서 찼던 것이다²⁷⁾.

그리고 개짐이라는 수건을 착용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사투리로 서답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여성의 月經帶인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때에만 착용하는 것이지만, 형겁이나 또는 물끼를 잘 뺄아들이는 천을 사용했다.

그러나 위에 말해온 내의들은 빈부의 차이나 계층, 또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또 예의에 나아 가지 않는 평상시에는 가지수를 줄여 입는 법이 있었다. 또한 제사지낼때에도 옷의 가지수를 줄여 입는 것이 예의였다.

여기서 朴珪壽가 논의하고 있는바 여성 속옷의 간소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개화기시대 이상으로 크게 소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걸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과 관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간소화되는 뚜렷한 계기는 아무래도 洋裝時代의 개막과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朝鮮日報에 의하면 “世相은 달라졌다”²⁸⁾는 기획중에 服飾의 章에서 ‘여성속옷 간소화’라는 일장을 읽을 수 있다. 이 기사는 “生活 혁명 어제—오늘—내일을 염두 시리즈”중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귀절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다른 사진들에서 보이는 洋裝의 모습은 치마 길이가 점점 무릎밑까지 치솟고, 소매의 길이도 어깨선에 가깝도록 짧아진다. 이러한 여성 洋裝의 변화와 유행, 자유연애 풍조와 性開放풍조는 드디어 5~7가지의 속옷으로 무장을 단단히 했던 한국여성의 속옷을 해방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짧아진 양장을 입기 위해서는 제일안에 다리속곳 그 다음에 속속곳 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무지기 대衿치마 등을 차례로 입어야 했던



〔사진 12〕 [단속곳; 石窟善 복식사에서]

26) 石窟善, 전계서, p.519.

27) 梨大出版部, 韓國女性史, Ⅱ권, p.200.

28) 朝鮮日報, “世相은 달라졌다” 1972.

재래의 하반신 복식구조를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입기 좋은 샤쓰, 팬티, 사루마다 속치마가 등장한 것이다. 속작 삼은 샤쓰,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는 팬티, 단 속곳[사진 12] 너른바지는 사루마다, 무지기 대 숨치마는 속치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지만은 되살아났다. 이것은 한복에는 역시 바지를 입어야 겉옷의 모양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었다. 하반신 복식구조가 완전히 해방이 이룩되었다.”

IV. 結 論

이상의 여성의 內衣를 중심한 풍속개량논의점을 살펴 보았지만 여성의 服飾風俗이 항상 문제 가 되어 온것은 남성복식과 달리 그 풍속과 유 행의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男性服飾은 아무래도 유교경전이나 中國제도가 어느 기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女性服飾은 그러한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風俗과 流行에 더 민감했 으며 그런점에서 보면 여성복식이야말로 중국의 영향보다는 순수한 우리 固有服飾의 발전 양상

을 보여줄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의 복제도뿐 아니라 머리장식이나 복식장식에 이르 기까지 마찬가지의 논리에 선다. 이런 점에서 여성복식의 연구가 남성복식을 기준으로한 예의로써 비판되었다는 점에 朴珪壽를 포함한 모든 남성論者들의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성복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風俗史的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필자 자신 이점을 심 각히 느끼면서도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앞으로 이 방면의 研究가 뒤따라야 할 것이니 예를 들면, 女性의 속저고리가 壬辰亂 이후에 걸저고리도 되고 그것이 짧아지는 경향과 관계 가 있다고 할 때 이 한예만 보아도 넉넉히 그 風俗史的 관찰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거의 遺品이나 關係文獻을 구할 수 없는 庶民服의 경우, 그 검토자료의 빈곤은 이 방면의 학도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이 점은 民俗調查방법등 관련분야의 도움을 얻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의 제기라는 점에서 미정 그대로를 발표하며 계속 공부할 자료로 삼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① 朴珪壽, 居家雜服攷, 內服편
- ②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55.
- ③ 李漢, 星湖僕說類選
- ④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韓國研究院, 1963.
- ⑤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 ⑥ 柳喜卿, 文獻에 나타난 李朝時代의 女子服飾小考, 한국여성 문화논총
- ⑦ 鳥山喜一, 鮮民白衣考, 東洋史論叢, 昭和 8年.
- ⑧ 梨大出版部, 韓國女性史 II권, 1972.
- ⑨ 李德懋, 「青莊館全書」士小節
- ⑩ 宋文欽, 婦人服飾考
- ⑪ 林巳奈夫編, 漢代の 文物.
- ⑫ 金東旭, 高福男, 朝鮮時代出土遺衣의 服飾史的研究, 「服飾 2號」
- ⑬ 『宋史』「高麗傳」
- ⑭ 시볼트, 「日本」제 5권 「조선어부의 一家」
- ⑮ 李粹, 「四禮便覽」
- ⑯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晋齋, 1978.
- ⑰ 李寅文 美人圖
- ⑱ 朝鮮日報, “世相은 달라졌다” 1972.
- ⑲ 「世界人名大事典」玄文社 1975.
- ⑳ 宋時烈, 「戒女書」, 齋文堂

〈服飾 : 제4호, 1981. 2〉